

2024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세부요령

2024. 4.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목 차

I. 공통 점검 사항

1. 농장의 출입 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가. 울타리·담장	5
나. 농장 출입 통제시설	7
다. 출입 차량·장비 등 소독시설 관리 및 소독 이행 상황	9
라. 방역기록(출입기록, 소독기록 등)	12

2.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신발소독조 등 농장 출입 관리

가. 방역실	13
나. 외부 물품 반입시설	15
다. 신발소독조	15

3.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관리

가. 전실	17
-------------	----

4. 야생동물 차단망, CCTV 등 설치 및 농장 소독, 구서 등

가. 야생조수류 차단망	23
나.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24
다. 농장 마당 및 농장 내 시설·장비 등 청결 상태	25
라. 구서작업	27

5.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준수사항

가. 입식 사전 신고	28
나.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여부	29
다. 방역기록(폐사율·산란율 등)	30
라.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31

6. 시설출입차량 관리

33

II.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1. 산란계	34
가. 농장과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구분 및 관리 ...	34
나. 집란실	36
다. 방역위생관리	36
라. 터널식 소독시설	37
마. 식용란 상차장	37
바. 알분뇨벨트 관리	38
사.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38
2. 종계·종오리	39
3. 육계·육용오리	42
4. 토종닭	42

I. 공통 점검 사항

1. 농장의 출입 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가. 울타리·담장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울타리)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 설치

○ 울타리·담장이 농장 둘레를 따라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 사람 또는 차량이 제한 없이 출입할 정도의 틈이 있는 경우 부적합

- 자연경계의 경우, 개천, 경계림, 고도 차이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출입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점검

* 예시 : 폭 1.5m 이상의 개천(물이 있는 곳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 나무 등이 뺄뺄한 경계림 / 높이 1m 이상의 고도 차이 등

- 차량과 사람이 출입 가능한 자연경계는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조치

- 등산로 등 길 옆에 위치하고 있고, 농장 경계에 나무는 있으나 덩성 덩성하여 사람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울타리 설치

- 농장과 인접한 논·밭은 종사자(작업자) 등 출입이 가능할 수 있어 자연경계로 인정이 어려워 울타리 설치하도록 조치

* 논·밭의 경우에도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개천·경계림·고도차이가 있는 경우는 울타리로 인정되나, 고도차이가 낮은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필요

※ 자연경계는 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한 지형이며, 수직 응벽 등으로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이 차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 이외 부적합

○ 자연재해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울타리·담장이 훼손·파손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야생동물의 침입 여부 등 확인

○ AI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차량의 출입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축사와 구획되는 내부 울타리를 농장 내 설치하여 축사를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할 것을 권고



나.

농장 출입 통제시설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② (통제 안내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농장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③ (차단장치) 진입 차단시설(차단바, 문 등) 설치

- 모든 출입문이 평상시에 항상 닫혀 있는지 여부

- ※ 농장 차단진입 통제시설(차단바, 줄·문 등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

○ 농장 모든 출입구에 대해 차단 및 관리사항 점검

- ※ 분뇨 반출 등을 위한 부출입구도 출입구에 포함되며, 출입 통제 및 소독시설이 없으면 폐쇄하여 주출입구(단일)만 이용하거나, 통제 및 소독시설을 구비한 후 운영토록 조치

○ 접근방지 경고용 표지판(출입통제 안내판)이 모든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 차단방역에 대한 경고, 접근통제 문구, 농장관리자 연락처 등 정보

[참고] 출입통제 안내판



○ 모든 농장 출입구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부출입구를 포함한 출입구 중 한 곳이라도 차단시설(차단바·문)이 없는 경우 부적합

※ 모든 농장 출입구 차단진입 통제시설(차단바, 줄·문 등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고 통제시설이 정상 작동되어야 함

[참고] 차량 진입 통제



[차량 진입 통제 부적합 사례]



- 모든 출입구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단시설을 거치지 않고 옆길 등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적합
- 농장의 모든 출입구가 닫혀 있어 사람·차량이 농장 내로 무단출입하지 못하며, 소유자(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후 출입을 하고있는지 점검
 - ※ 방문자를 위한 소유자(관리자)의 연락처 기재 안내문을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권고
 - ※ 주 출입구에는 출입 통제가 되나,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부적합

[참고] 출입문 폐쇄



농장 출입문 폐쇄



농장 출입문 폐쇄



농장 출입구(후문) 폐쇄

[부적합 사례]



출입문(쪽문) 미폐쇄

[참고] 출입통제



농장 출입구 출입통제 (안내실에서 출입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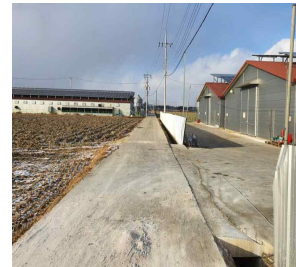


출입 차량 통제

[부적합 사례]



농장 후문 차량 출입 미통제



출입구 차단시설 미설치 및 출입 미통제

다.**출입 차량·장비 등 소독시설 관리 및 소독 이행 상황****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 ④ (차량 소독시설)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1,000m² 이상 의무)
- 차량 전용 고압분무기 설치(50~1,000m²미만 농장 중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차량이 출입하는 모든 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출입구(부출입구 포함) 폐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 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 ⑤ (출입구 고압분무기) 각 차량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장치(고압분무기 등) 설치

- ⑥ (시설용 고압분무기) 농장 시설·장비 등 소독용 고압분무기 구비

- ⑦ (대인 소독시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 ⑧ (소독액 관리) 농장 출입자,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 관리
- 소독시설의 소독제를 2~3일 마다,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 여부
 - 소독제 적정 사용 여부(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및 희석배수 준수)

- ⑨ (동결방지)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

※ 약사법 제46조에 따라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장(1,000m² 이상)의 모든 출입구에 고정식 소독기 설치 여부 확인
 - 소규모 농장 등 고정식 소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확인
 - ※ 부출입구 등을 포함해 농장의 모든 출입구에 고정식 소독기 또는 고압 분무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곳이라도 미설치 시 부적합

[참고] 소독기 유형		
		
터널식 소독기	U자형 소독기	유기물제거 고압분무기

- 소독시설(터널식, U자형, 고압분무기 등)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바퀴 등 차량 하부가 흠뻑 젖도록 30초 이상 소독하도록 지도
 - ※ U자 또는 I자형 소독기는 양쪽 중 한쪽이라도 소독기가 미작동한다면 부적합 판정
- 농장 시설·장비 등 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 등 구비 여부 확인
- 소독약 보관 용기 및 희석을 위한 용기 구비 여부 확인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 차량의 운전자 등 사람에 대해 의복·신발 등 소독하고 있는지 확인
-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흙반이, 차량바퀴 등 유기물 제거를 위한 2차 소독을 하는지 확인
 - ※ CCTV 영상으로 소독 여부 확인(확인 시점에 미준수시 실시하도록 권고)
 - ※ 2차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시설 작동시간 또는 분무량 등 미흡 시 개선하도록 지도

-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하고 있는지 확인
 - ※ 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기물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등 확인
- 소독제 적정 사용(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여부 확인
 - ※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및 희석배수 미준수 시 부적합
 - ※ 농장주(관리자) 등 실제로 소독하는 사람에게 소독제 희석 비율 등을 질문하여 이행 여부 확인
 - * AI 유효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 소독약품 ⇒ 효력인증 소독제 현황 열람

[참고] 출입 차량 소독 위반사례



차량 운전자 방역복 미착용 및 소독 미실시



차량 운전자가 방역복 착용 후 대인 소독 미실시

[참고] 소독 예시



고정식 소독기를 통한 소독실시



고압분무기를 활용한 2차소독 실시

[부적합 사례]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출입차량(농장주) 소독 미실시

라.

방역기록(출입기록, 소독기록 등)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⑩ (기록부)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 누락사항 없이 작성 및 1년간 보관 여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

-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 포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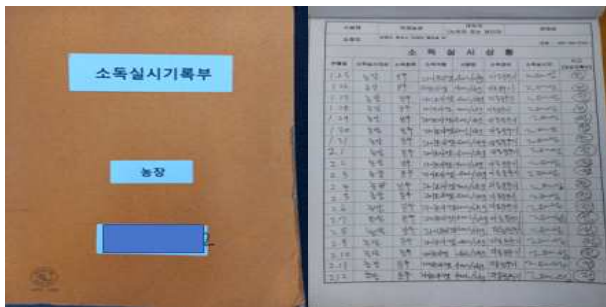
-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

⑪ (소독) 모든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해 출입 전·후 각각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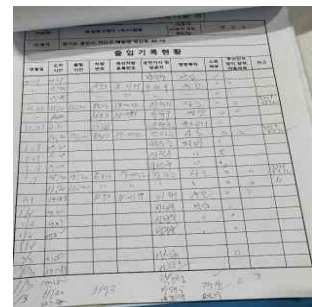
-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하고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 및 1년간 보관 여부 확인

※ 법정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6호)에 따라 차량 번호, 운전기사, GPS 장착 여부, 소독 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

[참고] 소독실시기록부, 출입실시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2.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설치 및 신발소독조 등 농장 출입 관리

가.

방역실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방역실) 농장 입구에 방역실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농장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설치

② (방역용품) 방역실에 방역용품[작업복, 신발·장갑(1회용 포함)] 구비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덧신 포함)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한 후 출입

○ 농장 출입구에 방역실 설치 여부 점검

- ※ 방역실에서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대인소독, 신발소독, 환복, 덧신 착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 방역실 규격은 소독실 포함 2×2m 이상 설치 권고

○ 방역실을 통해서만 농장 내로 진입 가능한 구조 인지 확인

- 울타리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여부 확인
- ※ 방역실을 통하지 않고 농장 내 진입 가능한 경우, 방역실의 위치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

○ 방역실의 형태가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으로 외부와 차단 여부 확인

- ※ 방역용품 창고 등 대인 소독을 하지 않는 형태인 경우 부적합

○ 방역실에 신발소독조, 손 소독설비, 방역용품* 구비 여부 점검

- * 방역실에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세척된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신발소독조에는 신발 하부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5cm 이상의 소독제가 있도록 권고하고, 부족할 경우 현장 지도

○ 방역실에 출입자의 옷 등 소독을 위한 분무형 소독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권고

[참고] 방역실



[참고] 방역실 내부



○ 방역실 신발소독조 등 관리 여부 확인

※ 충분한 양의 소독제가 채워져 있고 유기물에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신발소독조에 소독제가 없거나 유기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소독제 적정 사용(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여부 확인

※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및 희석배수 미준수 시 부적합

※ 농장주(관리자) 등 실제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소독제 희석 비율 등을 질문하여 이행 여부 확인

* AI 유효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 소독약품 ⇒ 효력인증 소독제 현황 열람

나.**외부 물품 반입시설****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③ (물품반입창고) 약품·기자재·소모품 등 외부 물품을 소독 후 보관하는 반입창고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 우편물 또는 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등을 소독 후 별도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물품 보관창고 구비 여부 확인
 - ※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 설치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나, 명확히 구획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인정
 - ※ 물품반입창고는 가급적 농장 울타리 외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물품 반입시설 내외부에 소독용 분무기 또는 자외선 소독기 등 소독시설을 구비·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신발소독조****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④ (신발소독조)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집란실 및 각 축사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신발소독조 소독제 적정 관리·사용 여부**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 ※ 약사법 제46조에 따라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농장 출입구(방역실*),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전실), 집란실(산란계·종계 등)에 신발소독조 설치 여부 등 점검

* 방역실 및 전실은 별도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 상기 장소 중 1개소라도 신발소독조가 없는 경우 부적합

※ 상기 장소 외 근로자 숙소, 퇴비장 등 농장 내 시설 마다 신발소독조를 설치하도록 권고

○ 소독시설 소독액 교체(2일~3일)·유기물 오염 여부 확인

※ 신발소독조에 소독제가 없거나 유기물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 부적합

※ 신발소독제에는 신발 하부가 충분히 소독될 정도의 소독제(5cm이상 권고)를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

○ 소독제 적정 사용(조류인플루엔자 등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여부 확인

※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및 희석배수 미준수 시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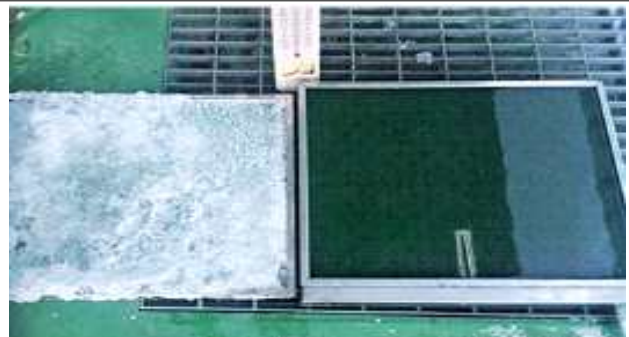
※ 농장주(관리자) 등 실제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소독제 희석 비율 등을 질문하여 이행 여부 확인

* AI 유효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 소독약품 ⇒ 효력인증 소독제 현황 열람

[참고] 신발 소독조



<파란색: 소독액 높이 5cm 이상>
<빨간색: 소독액 높이 10cm 이상>



<소독액 높이 부족>

3.

전실 설치 및 사육시설(축사) 출입 통제 · 관리

가. 전실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전실)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

-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
-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전실 내부를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
-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 설치
- 전실 내 손 세척 설비를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 구비
- 전실이 없는 축사의 출입구(뒷문, 쪽문, 후문 포함) 폐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 1)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 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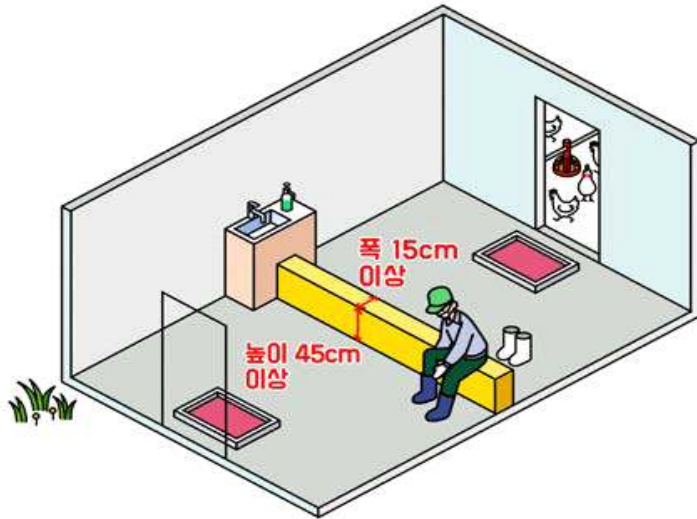
② (축사 출입) 전실 내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 후 출입
-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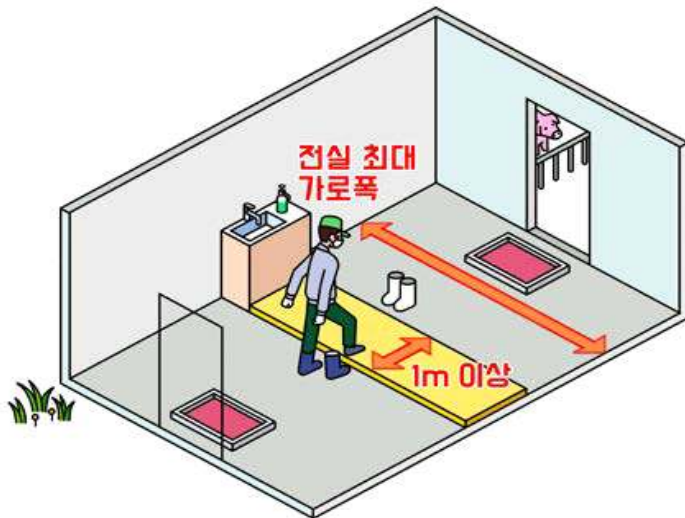
- 각각의 축사(사육시설) 입구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축사 출입구에 위치한 축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일 것
 - * 축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축사와는 구획·차단되어야 함
 - 축사 입구와 떨어져 있어, 축사 진입 시 외부에 노출되는 곳은 위치·구조 등 변경 조치
- 전실이 사육시설(축사)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전실이 축사와 명확히 구획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사육시설로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바닥을 포함한 실내 공간 전체가 차단벽(막) 등으로 축사 외부/내부와 물리적으로 구분
 - * 비닐·낮은 나무판 등으로 단순 경계만 구획한 경우나, 바닥이 축사 외부/내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
 - ** 전실 내 전기설비 등으로 주기적 환기가 필요한 경우, 여닫는 창 등은 설치 가능
 - 전실 내 소독 후 다시 전실 입구로 나와 다른 통로를 통해 축사로 진입하지 않아야 함
 - 바닥은 청소·소독이 용이하게 전체를 포장(콘크리트·시멘트 등) 하거나 장판 등을 깔 것을 권고
- 전실 내 신발소독조 설치, 사육시설 전용 장화 구비 여부 확인
 - ※ 사육시설 전용 장화를 비치하고 외부 사용 신발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외부에서 장화 밑창 등에 묻혀 오염원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
- 손 세척 또는 소독을 위한 설비·물품 여부 확인
 - ※ 사육시설 진입 전에 손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손에 묻은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손 소독기 구비 권장)되어 있거나 관련 물품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여야 함

[참고] 전실 예시(권장)



<고정된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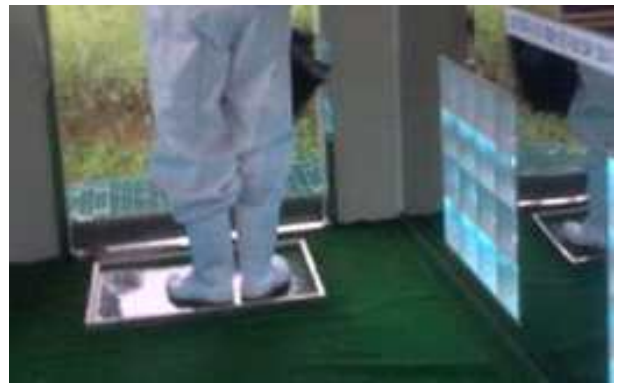
- 높이 45cm 이상, 세로 폭 15cm 이상으로 하여 농장 종사자가 걸터앉아 쉽게 장화를 신을 수 있도록 설치



<발판>

- 사람의 보폭을 고려하여 세로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 외부 장화를 신은 채 발판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설치

[참고] 전실 신발소독조 및 축사 전용 장화



[참고] 부적합 사례



- 축사 전용 장화가 청결히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 ※ 축사 전용 장화가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용 솔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유기물을 털어내고 세척, 소독하여 청결히 관리되고 있는 여부
 - 먼지 등이 날리거나 분변, 깔짚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히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손 세척 소독 장비 구비, 구분된 장화, 장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발판, 방역복 및 장갑, 마스크 등의 구비 여부 확인
 - 신발소독조 관리 여부 확인
 - ※ 오염구역 신발소독조(소독액 높이 5cm 이상), 청결구역 신발소독조(소독액 높이 20cm 이상)에 충분한 양의 소독액이 채울 것을 권장
 - ※ 청결구역 신발소독조는 장화 소독을 위해 소독액 높이가 더 높아야 함
 - 소독제 적정 사용(조류인플루엔자 등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여부 확인
 - ※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및 희석배수 미준수 시 부적합
 - ※ 농장주(관리자) 등 실제로 소독하는 사람에게 소독제 희석 비율 등을 질문하여 이행 여부 확인
- * AI 유효소독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방역 ⇒ 가축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 소독약품 ⇒ 효력인증 소독제 현황 열람

[참고] 현장 적합 사례		[부적합 사례]	
			
전실 발판을 이용하여 흰색 장화갈아신기	전실 신발소독조를 통한 장화 소독 실시	농장주 및 종사자 축사내 방역복 미착용	전실 청소 상태미흡 (방역복재 활용, 소독약품 방치 등)

- 전실이 설치된 주출입문 이외의 모든 부출입문(쪽문, 뒷문 등)의 폐쇄 여부 또는 전실 설치 여부 확인

<적합 기준>

- ① 전실이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이 하나일 경우
- ② 모든 출입문(쪽문, 뒷문 포함)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부적합 : 적합 기준 ①, ②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3.10.19. 이후 불인정되는 전실의 예시>

- ① 사육시설이 한 동인 경우 방역실을 전실로 인정한 것
- ② 두 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해도 인정한 것
- ③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한 전실

- 축사에 구멍 또는 훼손으로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지, 축사 외벽 손상 여부 등 확인

※ 축사 구멍 또는 훼손으로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

[참고] 축사 쪽문



4.

야생동물 차단망, CCTV 등 설치 및 농장 소독, 구서 등

가.

야생조수류 차단망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차단망)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 (쥐, 새 등) 차단망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이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점검

※ 시설 특성상 어느 한 곳이라도 차단망이 없거나 훼손되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야생조류나 동물들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부적합 판정

※ 점검 시 농장 내 시설 중 추가로 차단망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에 추가 기재

[참고] 차단망, 그물망



(적합) 환기구 방충망



(적합) 환기구 방충망



(부적합) 그물망 미설치

나.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항목 및 관련 규정

② (CCTV)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CCTV 설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기준

-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

③ (영상보관) CCTV 정상 작동 및 영상기록 30일 이상 저장·보관 여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기준

-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다만,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기준

-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

○ CCTV가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

○ CCTV 영상기록이 30일 이상 저장·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최소 3일간 출입하는 사람, 차량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참고] 현장 사례



[부적합 사례]



출입구 식별 불가



30일 미만 저장



CCTV 고장

다.**농장 마당 및 농장 내 시설·장비 등 청결 상태****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④ (농장청결) 사료빈 및 사료창고, 축사 주변에 잔존 사료 등이 없도록 청소 여부**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함
 -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료보관통(사료빈), 사료창고, 축사 주변 떨어진 사료를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는지 확인

- ※ 사료빈 주변 등에 사료가 떨어진 상태로 상당 기간 방치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부적합

○ 왕겨·깔짚창고, 퇴비장, 사료창고, 집란·분변벨트 주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소독 여부 확인

- ※ 축사 내외부 시설에 대해 청소·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료, 분변 등 잔존물이 방치되고 오염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 이동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 ※ 왕겨살포기 등을 소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적합

○ 축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도구·기자재가 야외에 노출되지 않고 실내 등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 적합 : 기자재·물품(상자·바구니, 알수집도구, 합판·팔레트 등)을 실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야외에 있더라도 평상 시 방수포·비닐 등을 덮어 관리하고 있음

- ※ 부적합 : 야외에 기자재·물품 등이 항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

- 야생동물과의 접촉 등을 통한 오염 차단을 위해 실내 보관하도록 권고

○ 축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여부, 축사 내외부 청소·소독 및 청결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있는지 확인, 차단망 등 보수 여부 확인

※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청소·소독하도록 권고

[현장 사례]		[위 반사례]	
			
사료빈 주변 떨어진 사료 없이 청결	사료빈 주변 떨어진 사료 없이 청결	사료빈 주변 사료 잔존물 처리 미흡	사료잔존물 및 잡동사니 등 청소 상태 미흡
[현장 사례]	[위 반사례]		
			
축사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실시	퇴비사 분변 벨트 하단 떨어진 계분 방치	깨진계란 방치 등 집란벨트 청소상태 불량	축사동 내부 거미줄, 먼지 등 청소상태 미흡
[현장 사례]			
			
도구, 기자재 등을 별도 장소에 보관	사육도구(사료통) 외부 보관	알 운반용 파레트 외부 보관	농장 기자재 외부 보관

라.

구서작업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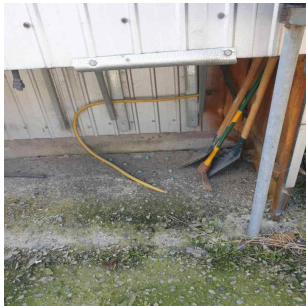
⑤ (구서) 구서제 살포 또는 전문업체 등을 통해 구서 작업 실시 여부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설치류 제거작업을 하거나 구서제 살포 여부 확인

- ※ 축사 내외부, 사료빈 주변, 왕겨창고, 퇴비장, 집란·계분벨트 주변 등에 구서제 설치 여부 또는 전문업체로부터 구서 작업을 받는지 계약 내용 등 확인
- 구서제 살포, 끈끈이등 쥐덫 설치 여부, 쥐막이 통 설치 등

[참고] 현장 사례



축사주변부 과립형 구서제 살포



쥐덫 설치

[부적합 사례]



구서작업 미흡 (축사아래 쥐구멍)



구서작업 미흡 (구서제 교환 안함)

5.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준수사항

가.

입식 사전 신고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입식신고) 닭, 오리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 지자체 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함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함
 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을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 여부 확인

○ 입식 신고 전 방역/소독시설 자체 점검 실시 여부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농장에서 신고 전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 자체 점검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필요

나.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여부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② (교육)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 여부

- ※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및 별표3의3
- ※ 최근 1년간 의무교육자가 교육을 이수

○ 의무교육 해당자의 축산관련 종사자 방역교육 이수현황 확인

- ※ 적합 : 교육받은 증빙서류(수료증 등) 확인 또는 온라인(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종사자교육 이수현황 확인
- ※ 부적합 : 교육받은 증빙서류(수료증 등) 확인 또는 온라인(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종사자교육 이수현황 확인 불가

※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방역기록(폐사율·산란율 등)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③ (기록 제출) 축사별 폐사 및 산란(산란가금에 한함) 현황 기록 여부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시군구에 매월 5일까지 제출 여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보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폐사율 및 산란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7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축사별 일일 폐사일지 및 산란일지(산란가금에 한함)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

※ 농장 단위가 아닌 축사 단위로 기입하고 있는지 확인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매월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는지 확인

-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지도

※ 매월 5일까지 시·군·구로 제출한 축사별 폐사 및 산란현황 관련 서류 확인

라.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④ (방역관리) 방역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 방역관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에 의거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 사육 농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율방역관리를 위한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⑤ (거래 기록)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 유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 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

⑥ (기자재·소모품) 소모품 등은 창고 또는 실내공간에 보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가축 사육 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세척·소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부에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함

○ 방역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정기적 방역관리 여부 점검

※ 방역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점검

※ 컨설팅 계약서 확인 및 컨설팅을 실시 보고서 등 확인 점검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3. 가축의 예방접종
 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종계장 및 방역관리강화대상*이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 거래 기록 유지 여부 확인

* 방역관리강화대상 :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거래 상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 계류장 포함)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3호) 제7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19호) 제5조

○ 농장내 기자재, 소모품 등은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 여부

6.

시설출입차량 관리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차량등록) 농장에 출입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

② (출입차량표지)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함.

- 축주 등 소유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중 농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 여부

※ (적용예외) ①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 농장 외부에 주차시설 및 주차가능 장소 구비 여부 확인
-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승인 하에 농장 내부에 가축사육시설과 별도의 구획된(내부 울타리, 차단시설 등, 대인소독시설 구비)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시군에 신청서 제출 → 시군 확인)
- 등록관청에서 부여받은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

II.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1. 산란계

가. 농장과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구분 및 관리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시설별 분리) 농장과 출입구를 서로 분리, 별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여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공통시설

-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2)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 3)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4) 작업장, 창고, 관리사무실 등 차량의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반이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2) 난좌(卵座, 계란판), 파레트,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 3) 종축업·가축사육업의 사육시설이 식용란선별포장장과 인접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출입구를 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할 것
- 4)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입구에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對人)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 비료제조업자, 가축분뇨처리업자

-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 차체의 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차 시설을 설치하거나 1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 2)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에 대해 세차 후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1대 이상의 고압분무소독기를 갖추어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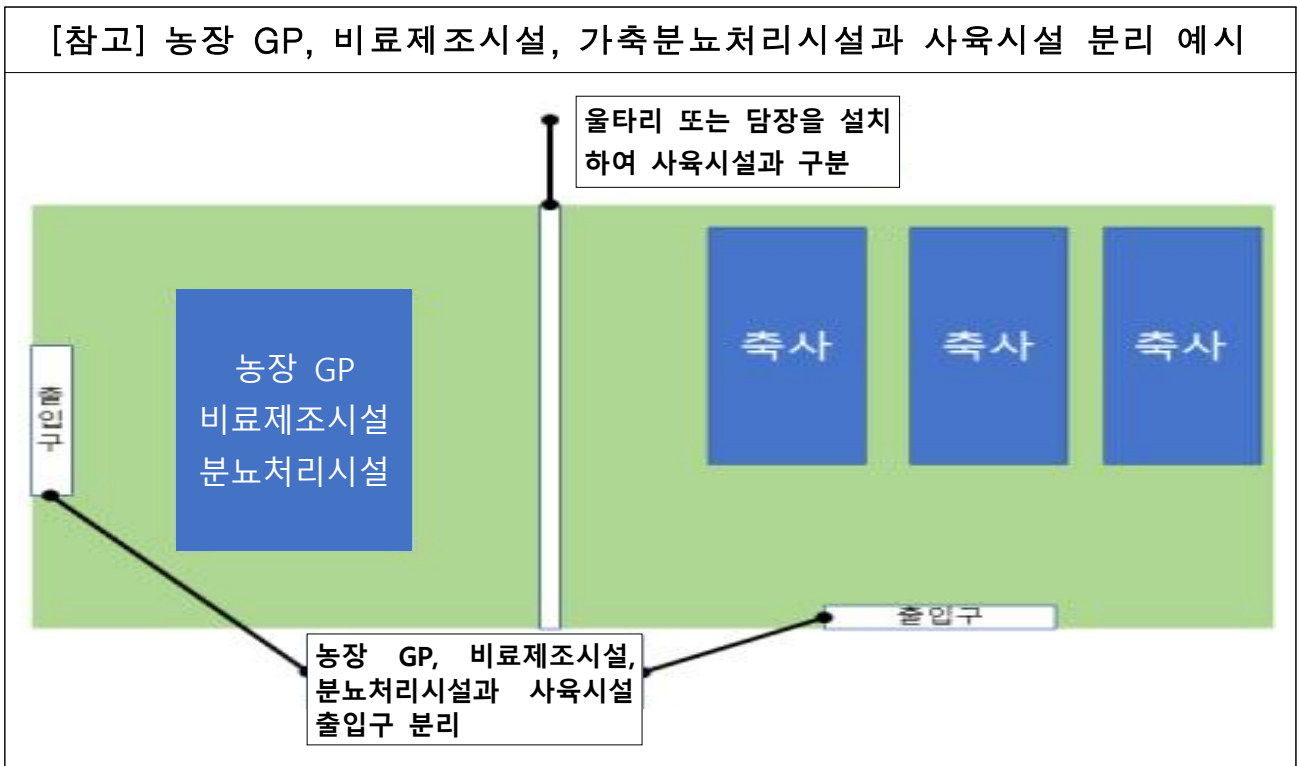
○ 식용란선별포장장(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사육시설

각각 출입구를 보유하고, 두 시설 간 사람·차량 등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없는지 점검

- 적합 : 식용란선별포장장(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사육시설 각각의 출입구 보유, 출입구 외 통로 없음

- 부적합 : 식용란선별포장장(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사육시설 각각의 출입구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같은 출입구를 사용

※ 농장 GP, 비료제조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사육시설 각각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두 시설 간 사람·차량 등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통로가 없어야 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점검

○ 농장과 GP, 비료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사이 별도 출입 통로가 있는 경우 소독시설 설치 여부 확인

나. 집란실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② (신발소독조) 집란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 집란실 출입구 신발소독조 설치 여부 등 점검

- ※ 신발소독제에는 신발 하부가 충분히 소독될 정도의 소독제(5cm이상 권고)를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

다. 방역위생관리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③ (소독·방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방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함(10만 마리 이상은 2021. 1. 1.부터, 5만 마리 이상은 23. 1. 1.부터 적용)

○ 소독 및 방제 관련 서류 확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3 서식)

라.**터널식 소독시설****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④ (터널식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터널식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바퀴 등 차량 하부가 흠뻑 젖도록 30초 이상 소독하도록 지도
-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등 구비 여부 확인
-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바퀴 등 유기물 제거를 위한 소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유무 확인
- 각 출입구에 ①고압세척기, ②대인소독기, ③출입기록부, ④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⑤차량진입 차단장치, ⑥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유무 확인

마.**식용란 상차장****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⑤ (식용란 상차장) 농장외부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 산란계농장 외부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 설치 여부 확인
- 각각의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출입구에 전실이 설치됐는지 확인

바.**알·분뇨벨트 관리****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⑥ (알·분뇨 벨트) 알·분뇨 운송벨트 등에 야생동물 차단 덮개 또는 차단망 설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운송벨트와 연결된 사육 시설·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 알·분뇨 운송벨트 및 연결된 사육시설·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 여부 확인

사.**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⑦ (난좌) 닭, 오리, 메추리 알 취급 시 1회용 난좌 사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난좌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⑧ (합판·파레트)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세척·소독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해야 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도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

-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 사용 여부 확인
- 알 운반용기(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운반용기도 농장 반입 전 세척·소독 여부 확인

2.

종계·종오리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① (샤워장) 샤워장 구비(사육시설 1,400m² 이상 의무)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② (시설별 분리) 부화장과 사육시설 구분·운영

- 출입구 분리, 별도로 소독·방역시설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할 것. 다만, 출입로가 협소하거나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발소독조) 종란 보관창고에 신발소독조 설치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④ (난좌) 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박스) 사용 시 세척·소독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⑤ (출입로 구분)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 구분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할 것

○ 샤워장 설치·운영 여부 점검

○ 부화장과 사육시설이 구분·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

- ※ 부화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출입구를 서로 분리하여 구조적으로 사람·차량 등 출입으로부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있는지 확인

- ※ 부화장과 사육시설 각각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두 시설 간 사람·차량 등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통로가 없어야 함

- (부화장) 농장의 방역시설과 별개로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입구에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등 방역시설의 설치 준수 여부 등 확인

[참고] 방역시설	
 <p><출입구 차량진입 차단장치></p>	 <p><울타리 또는 담장></p>
 <p><출입통제 안내판></p>	 <p><입구에 방역실></p>

- (부화장) 농장의 소독시설과 별개로 출입구에 세척·소독시설, 작업장·창고·관리사무실 등에 신발 소독조, 난좌·파레트·합판 등 식용란 운반자재 소독설비, 출입기록·소독기록부 등 설치·구비 여부 확인

[참고] 소독설비	
 <p><출입구에 세척·소독시설></p>	 <p><신발 소독조></p>
 <p><식용란 운반자재 소독설비></p>	 <p><출입기록·소독기록부></p>

○ 외부용, 농장전용 각각 신발소독조 설치 여부 확인

※ 신발소독조가 한 곳만 설치되어 있으면 외부 신발과 종란보관창고 전용 장화 간 교차 오염 가능성

○ 재활용 난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 여부 확인

※ 다회용 난좌의 위아래를 모두 세척하고 건조 소독이 가능한 장비로 소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출입로가 협소하거나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의 출입로와 사료·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3.

육계·육용오리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 ① (입출하) 농장 단위 일제 입식·출하 이행 여부(축사 단위 아님)
- 7일 이내로 하되, S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육계 5일, 육용오리 3일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올인 - 올라웃 이행 여부 점검

- ※ ① ~ ③ 항목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확인
- ① 점검 당해년도 올인-올라웃 위반사례 확인
 - ② 축사별 일령·주령 등 계군 사육현황을 확인
 - ③ 농장 사육출하일지와 계열사 출하 기록 대조·확인
- ※ 차단방역을 위한 위생적인 사육관리, 여러 일령이 동시 사육될 때 생기는 질병의 교차감염 및 난계대 질병 전파 가능성을 줄임

4.

토종닭

점검항목 및 관련 규정

- ① (이동승인) 전통시장 등 유통을 위해 가축거래상인에게 가금 유통 시 SI 검사 실시 여부(이동승인서 발급 여부)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육 가금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등 긴급한 때에는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등 가축거래 상인에게 가금 유통시 검사실시와 이동승인서 (별제 제7호서식) 사본 등을 확인 점검